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, 수수료,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그 세입에 충당한다.

제3조 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사업비, 인건비, 유지관리비, 차입금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.

제4조 (준용규정)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